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41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육아용품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박상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2

I. 개요

1.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41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25.

(3) 회 부 일 : 2025. 2.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상 영유아 양육을 위한 특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한정되어 있고 육아 초기의 필수물품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어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아용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육아용품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박상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 추가(제59조의4 제5항 신설) ○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요건: -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을 구입하고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박상혁 의원안)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육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신영대의원안) ○ 공제형태: 세액공제 ○ 공제비율: 15% ○ 공제한도: 자녀 1인당 300만원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

* 박상혁의원안 2025. 2. 25. 발의(의안번호 8413), 신영대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44)

☐ 2건의 개정안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 초기 필수물품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¹⁾ 육아

1) 박상현의원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제5항을, 신영대의원안은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함.

용품 구입비용의 15%(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²⁾은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0.75명으로 일부 반등하였으나, OECD회원국(37개국) 중 가장 낮으며 향후 현재와 같은 합계출산율 수준이 유지된다면 총 인구수가 2040년 기준 4,916만명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장 및 건전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³⁾. 이와 같이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므로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 이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첫째, 자녀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가구⁴⁾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은 월 111만 6천원으

2)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3)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2023.11.08

4)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로 2024년 가구 소득 대비 17.8%, 가구 지출 대비 29.4%로 나타났음. 이는 2021년 월 97만 6천원 대비 14만 증가(14.3%)⁵⁾한 수치임. 또한, 출산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거, 양육비 등과 관련한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통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은 의미가 있음⁶⁾.

[가족계획 시 고려사항 1순위]

고려사항	비중
주택마련, 주거비, 주택규모 등 주거문제	40.6%
자녀양육비용 및 교육비용	23.7%
가계경제 및 고용상태	22.0%
일/가정 양립 가능성	9.1%
가족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	4.7%

자료: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통계보고서」, 국토교통부, 2024.12.27.

주1: 자녀양육비용 및 교육비용을 고려사항으로 작용하는 비율은 2년 대비 1.3%p 상승하였음.

둘째, 육아와 관련된 비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⁷⁾, 그 외의 육

5)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5.5. 참고로 동 조사는 3년 주기 조사임.

6) 또한, 아기침대, 유아용 도서, 유모차, 영유아용 장난감 등 일부 육아용품의 경우 그 특성상 가격은 높고 사용기한은 짧은 경우가 많아 육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정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아용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⁸⁾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외에 육아용품 구입비용과 관련된 세제지원은 없는 실정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육아용품의 범위와 관련한 과세형평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은 육아용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과세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먼저, 육아용품은 그 특성상 일상 생활용품과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일례로, 유아용 의류, 유아용 도서, 장난감 구동을 위한 건전지 등 일견 일상 생활용품으로 보이는 육아용품 중 어느 범위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육아용품으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할 것임⁹⁾. 한편, 박상혁의원안은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에 대한 세액공제

70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
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
제하지 아니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
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
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
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8) 육아용품 구입비용은 이와 관련된 별도의 특례조항 없이 다른 일반적인 소비지출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
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등만이 적용되고 있음.

9) 이에 해당 생활용품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거주자를 위한 육아용품의 범주에 대해서도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고급 유모차, 고급 카시트, 매트 등 고가의 육아용품이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재화들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면 공제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제기도 우려됨.

둘째, 똑같은 육아용품 구입비용이라 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유무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져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셋째, 동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의 규모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계층 및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¹⁰⁾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주 육아 계층인 20~30대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대보다 면세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넷째,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육아 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고, 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보육급여등에 대한 비과세, 산후조리원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등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0) 참고로 저소득 면세자 비율은 2023년 33.0%임. (2014) 48.1% (2015) 46.8% (2016) 43.6% (2017) 41.0% (2018) 38.9% (2019) 36.8% (2020) 37.2% (2021) 35.3% (2022) 33.6% (2023) 33.0%

[현행법 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소득세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법 §12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									
	소득공제	·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소득법 §50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소득법 §59-2								
		<table><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 ~</td></tr><tr><td>세액공제액</td><td>연 25만원</td><td>연 55만원</td><td>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table>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table><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table>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 (연 7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	소득법 §59-4②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소득법 §59-4③							
자녀장려세제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100-28 ~ §100-31									
부가가치세	면세	· 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조특법 §106								
		· 산후조리원 면세	부가령 §35								

□ 또한,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¹¹⁾, 만 8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

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¹²⁾

유형	정책	구체적 내용	예산규모 (2025년)
보육·돌봄 정책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 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3,591억 1,900만원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 기회보장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 지원	1조 9,587억 3,800만원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2조 1,351억 2,800만원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434억 5300만원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하여 생애 출발선의 균등 교육 기회 제공	3조 1,020억원 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3조 3,531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772억 9,200만원

11)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12)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2025.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홍우형

문 의 처

02)6788-5149
